

특허법원

IP HIGH COURT OF KOREA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
특허법원

CONTENTS

04 인사말
08 일반현황
18 특허법원 조직
34 특허법원 재판
44 특허법원 기록



대한민국 특허법원을
찾아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분쟁이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입니다. 지난 1998년 개원 이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품종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심결취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대한민국 지식재산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2016년부터 심결취소 사건뿐만 아니라 특허 등에 관한 민사항소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식재산 재판의 핵심은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분쟁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충실한 사실심리를 요구합니다. 특허법원은 다양한 전공과 지식재산 재판 경험을 갖춘 재판부를 구성하고, 기술심리관, 전문심리위원 등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법률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재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심리절차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분쟁은 이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해외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국제영상재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법원과 국제기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과 국민이 신뢰하는 국제적인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특허법원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은 지식재산법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과제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변화하는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보호와 공정한 경쟁이 조화를 이루는 지식재산 사법을 구현하고, 미래 지식재산 사법의 발전을 선도하는 법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 책자에는 특허법원의 조직과 관할, 재판절차와 심리절차, 주요 판결과 국제협력 활동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가 대한민국 특허법원의 역할과 비전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특허법원에 애정 어린 충고와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원 법원장 한 규 현



"우리 사회의 혁신과 창조의
발걸음에 든든한 힘을 보태는
전문법원이 되겠습니다."

수석판사 정 택 수

안녕하세요, 저는 수석판사 정택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시듯이 이번 소개책자는 종전과 달리 새롭고 풍부하게 업데이트되었는데, 특허법원을 찾는 모든 분들께 더욱 생생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갈수록 국경을 넘어 펼쳐지는 양상이고, 세계 주요국은 국제적 수준의 신뢰를 확보한 법원을 지향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원이 그간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진 지적 공간으로서 미래를 향한 도약을 거듭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제적인 표준을 주도하는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충실한 재판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콘퍼런스 개최나 비교법 연구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과 사상이 빚어내는 거대한 변화와 복잡성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혁신과 창조의 발걸음에 든든한 힘을 보태는 전문법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의 무게와 시대적 소명을 늘 기억하고 동료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품고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힘쓰는 법관들을 비롯하여 빛나는 특허법원 역사에 함께한다는 긍지와 열정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삶이 오늘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시고 응원하여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청하면서 이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특허법원의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법정의 문이 정시에 열리고, 방대한 기록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관리되며, 국제 콘퍼런스의 무대가 세계인 앞에 완성되기까지 등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각 과를 든든히 이끄는 과장님들, 사건의 실체에 전문성을 더하는 기술심리조사관님들, 전문 영역을 책임지는 담당관님들, 재판의 최전선을 지키는 참여관님들, 조직의 기틀을 세우는 행정관님들, 크고 작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주무관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법원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은 특허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세계로 도약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는 그 성실과 헌신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동료애로 하나 되어, 세계 최고의 특허법원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무국 모든 구성원께, 존경과 애정을 담아 이 인사를 전합니다.

"믿음과 따뜻한 동료애로 하나 되어,
세계 최고의 특허법원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무국장 진 준 오

Overview 일반현황

목표 & 추진계획
연혁
관할
특허소송의 구조
숫자로 보는 특허법원



목표 & 추진계획

Mission 목표

IP Hub Court 완성
신속·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 최고의 IP 재판 구현

IP 기업이 선호하는 법원
IP 권리자와 경쟁자가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Strategy 추진계획

K-IP 재판 역량 강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판의 구현
- 표준심리절차의 정착 및 확대
- AI 시범재판부 운영

민사항소심 전문성 강화
- 침해소송 처리 경험 공유 및 쟁점 파악 효율화
- 침해소송 조정 활성화

기술심리 역량 고도화
- 기술심리·조사관 업무 역량 강화
-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및 전문심리위원 추천위원회 개편

K-IP Court 구축

글로벌기업 사건의 사법접근성 확장
- 국제영상재판의 실시
- 국제조정을 위한 기틀 마련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역할 확대
- 최신 IP 연구보고서 발간
- WIPO와의 사법 공조 및 영문 판결 제공

국제 교류 활성화
- K-IP Week 구축 추진
- WIPO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강화

K-IP 소통활동

지식재산 업계 의견 청취 및 지원
- 지식재산 정책포럼 의견 경청

IP 후속 세대 양성 지원
- KAIST 학생 대상 강의 및 교육
-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 대회 개최

온라인 아카이브 관리 체계화
- 판결문 신속 게시 및 국영문 자료 제공

연혁

1998
03.01.
특허법원 개원(서울고등법원 청사)
1994. 7. 27.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
초대 최공웅 법원장 취임



2000
03.01.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전



2003
09.01.
현 특허법원청사로 이전

2005
11.21.
재판부 확대(4개)

2010
03.2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전자소송을 도입한 한국 최초의 법원



2013
10.21.~10.22.
한미 지재소송 콘퍼런스

2015
10.14.~10.15.
제1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2016
02.22.
재판부 확대(5개)

09.01.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 제정

2017
05.23.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개원
(사법부 최초 법원 내 연구센터)

2018
04.28.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06.13.
국제재판부 설립

09.01.
특허법원 심결취소·민사항소 소송절차안내 제정

2019
01.25.
제1호 국제재판
- 2017허3720



2020
02.07.
제2호 국제재판
- 2019허4147

2021
11.17.
영상재판 확대 시행

2024
11.06.~11.07.
제10회 국제 콘퍼런스



2025
02.10.
제23대 한규현 법원장 취임

07.11.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전면개정 및 배포

11.07.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개정 및 배포

11.12.
제3호 국제재판
- 2024허14780

제4호 국제재판
- 2024허14803

2026
03.
AI 시범재판부 운영

관할

● 토지관할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전국을 관할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와 특허권 등의 침해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급관할

1. 심결취소 사건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뜻하는 것으로,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등 침해사건

2016. 1. 1.부터는 특허권 등 침해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특허권 등 침해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1. 심결취소 사건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 상표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 사건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을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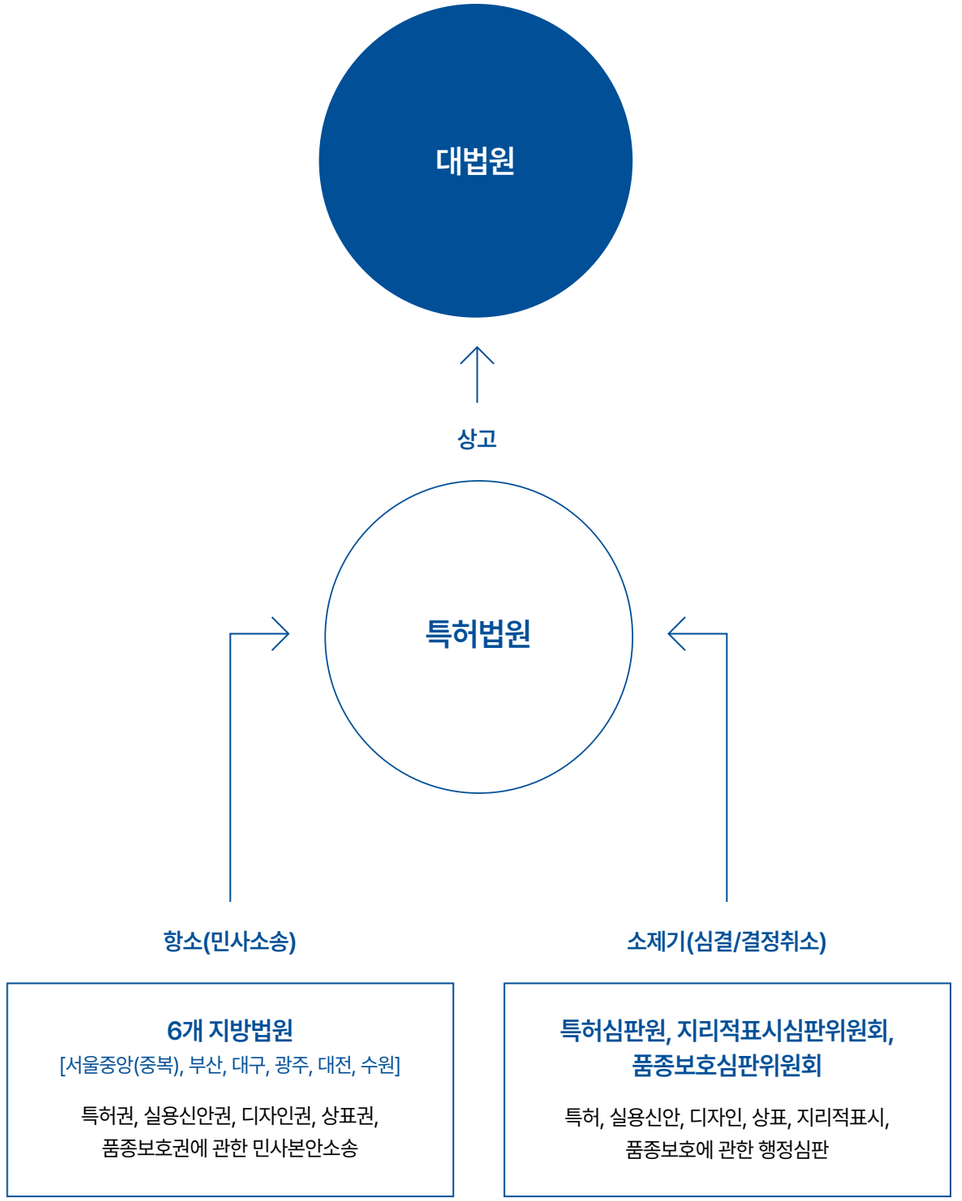
특허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종류

-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 등록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소송(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상의 소송(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

2. 특허권 등 침해사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건의 항소사건을 처리합니다.

특허소송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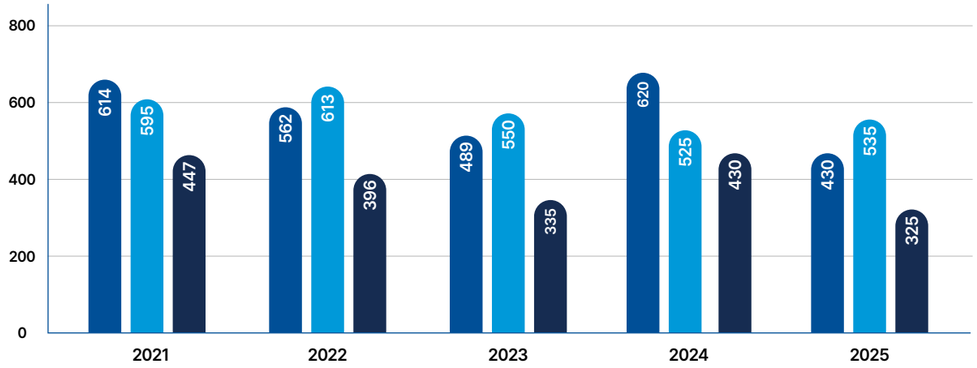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특허법원

(단위: 건)

사건 접수·처리·미제 현황

심결취소 사건



5년간

접수 2,715 건　　처리 2,818 건

민사항소 사건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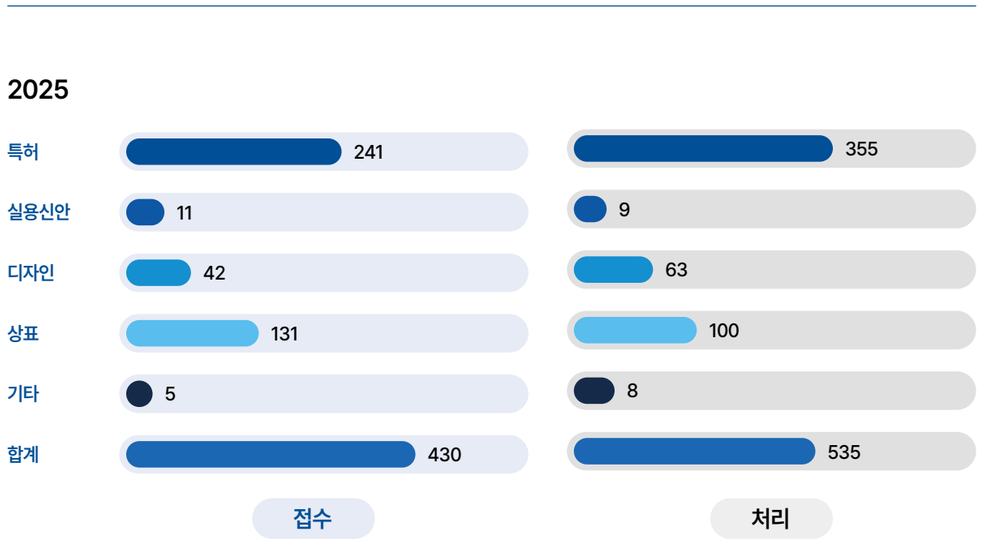
접수 758 건　　처리 703 건

심결취소소송 권리별 접수, 처리 현황

(단위: 건)

권리별 접수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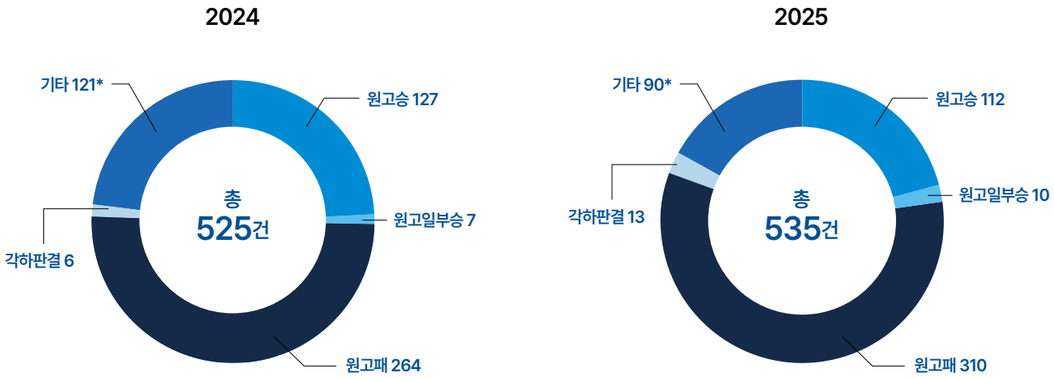




종국결과별 사건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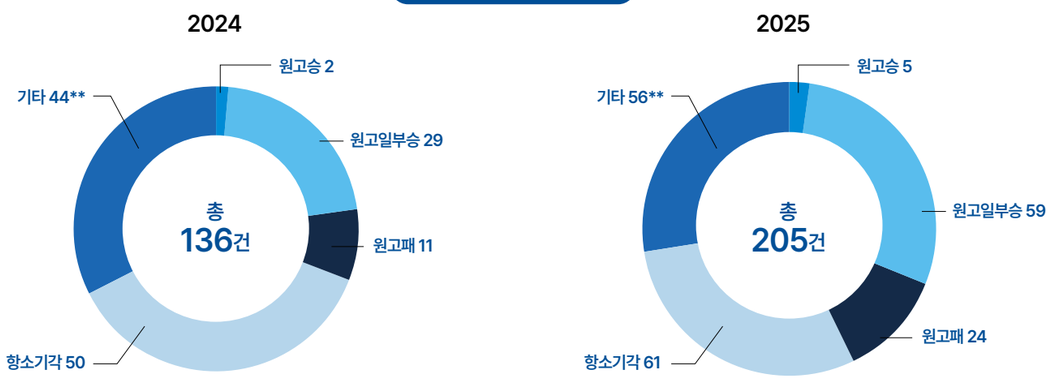
(단위: 건)

심결취소 사건



* 기타는 소취하, 취하간주, 소장각하명령 등임

민사항소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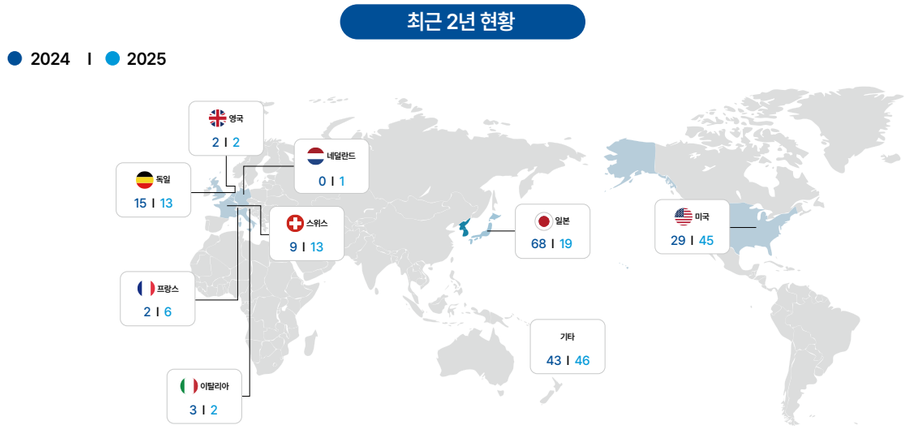


** 기타는 소취하, 항소취하, 이송, 화해권고결정, 각하판결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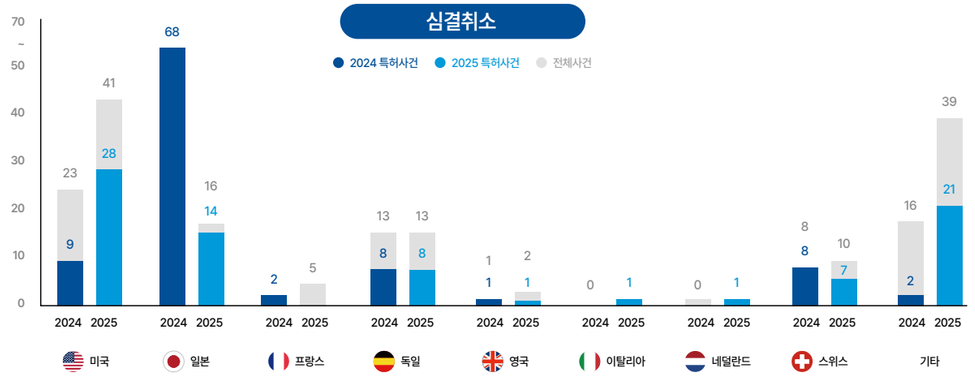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현황

[단위: 인(법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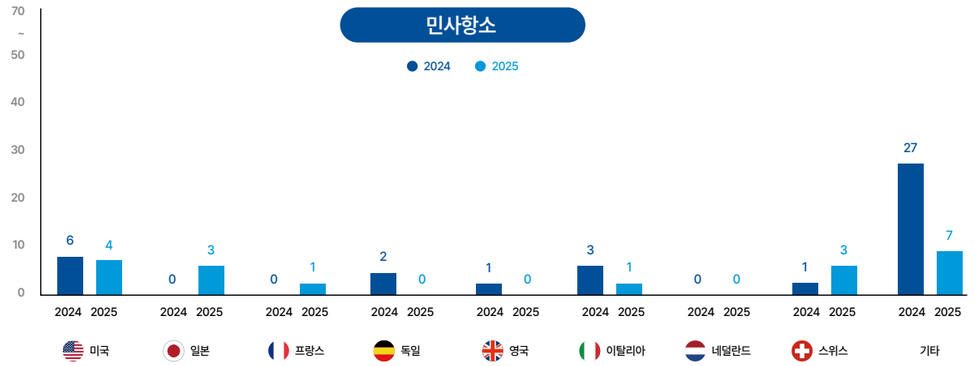
최근 2년 현황



심결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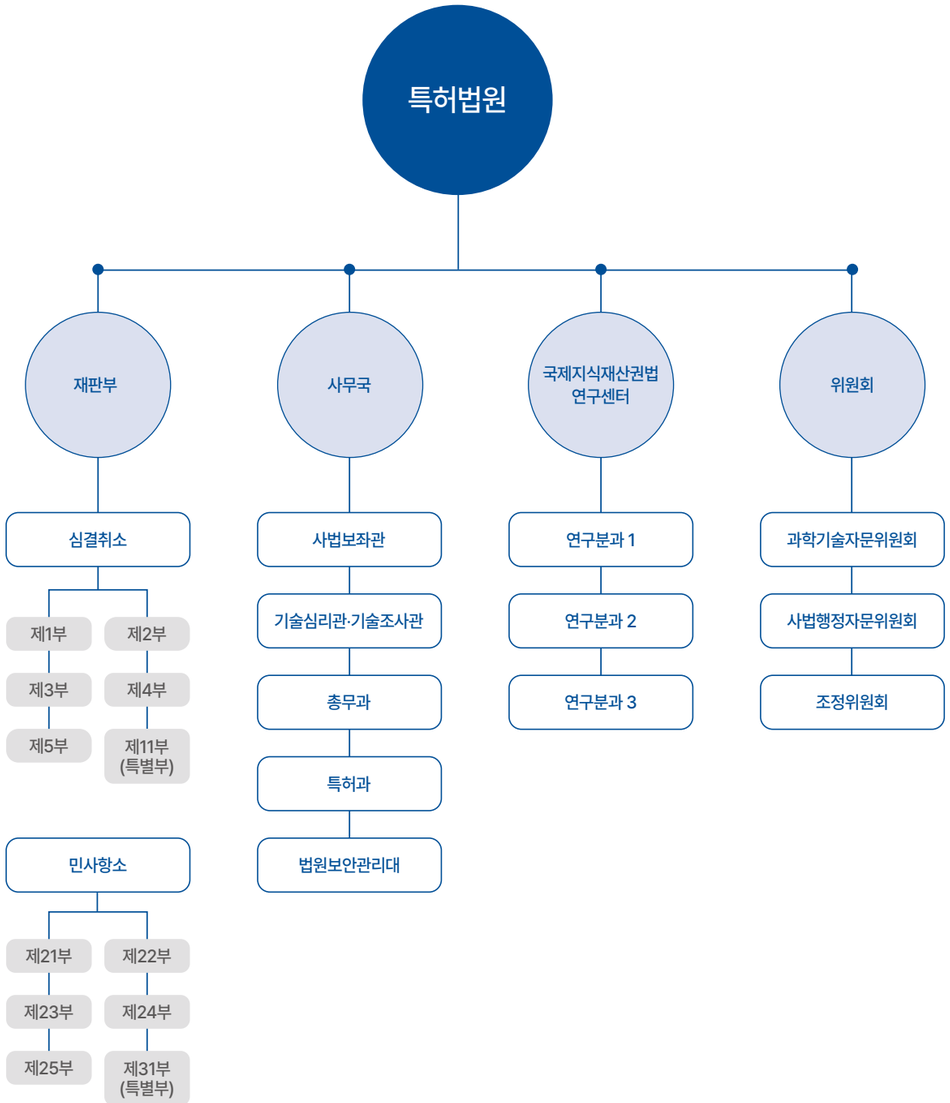
민사항소



Organization 특허법원 조직

조직도 & 인원현황
재판부
재판연구원
사무국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사법행정자문위원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외부 연계 조정기관

조직도



인원현황

(2026. 7. 1. 기준)

직종별 현황

법관	17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22
일반직	49
재판연구원	5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4
법원보안관리대원	8
	105

법관현황

분야별	인원수	학위별
고등법원장	1	이공/자연계 : 3명 인문/사회계 : 8명 이공계 및 인문계(중복) : 6명
IP전문 부장급 판사 (특허법원 고법판사)	7	
일반 순환 부장급 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	
일반 순환판사 (특허법원 판사)	7	

재판부

특허법원의 재판부는 특허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부와 고법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5개의 합의부가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심결취소 사건과 민사항소 사건을 담당합니다.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은 재판부에 배치되어 법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반도체 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들로, 주로 민사항소 사건과 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관련 심결취소 사건을 검토하고, 전문적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판장 인사말

제1부는 수석판사 정택수, 고법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으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정택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특허법원의 재판을 해온 비교적 많은 경험의 판사입니다. 김영기는 IP 전문성은 물론이고 절차법에 능통한 식견과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을 겸하면서 특허법원 표준심리절차의 전면개정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지환은 재료공학을 전공한 경력으로 특허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IP 전문법관으로의 큰 발전이 기대되는 판사입니다.

제1부에서는 화공생명공학을 전공한 재판연구원 곽혜민이 꼼꼼하고 성실한 보고서와 의견서로 3명의 판사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중현, 조경주, 이상태 등 총 22명의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이 제1부의 심리와 조사에 조력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허재판의 전문성 확보에 중요한 핵심자원입니다. 제1부는 앞으로도 깊은 사건 이해와 공정한 절차진행을 담보하는 신뢰받는 재판부가 되겠습니다.



[제1부]
재판장 수석판사
정택수



깊이 있는 연구와 치밀한 토론으로 바람직한 재판실무를 개척해가는 특허 제21부입니다. 우리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충실한 절차협의에 바탕을 둔 예측 가능한 재판'을 추구하는 재판부로서, 이를 이끄는 재판장과, 기술 및 전문 법리에 탁월한 식견을 지닌 두 명의 판사 및 재판연구원이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김영기 판사와, 우리 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을 담당하는 노지환 판사,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깊이 있게 조망하는 윤정운 판사, 그리고 매 사건 탄탄한 검토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곽혜민 재판연구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제21부는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복잡해지는 민사항소 사건에 발맞추어,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충실한 심리와 신속·정확한 재판으로 사법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부]
재판장 고법판사
김영기

저희 재판부는 특허법원의 다른 재판부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특별히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어변론 또는 국제영상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재판부'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외에 있는 당사자들도 시공간과 언어의 장벽 없이 특허소송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 최근에는 상용 AI 시범재판부로도 지정되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배경기술 검토, 외국어자료 번역 등 일부 제한적 업무에 상용 AI를 활용하면서 그 결과물의 품질이나 재판업무에서의 AI 활용 한계 등을 점검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 구성원들, 특히 박은희 고법판사, 권원명 판사, 우리 부 전속 재판연구원인 이영주 연구원은 IP 관련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전기공학을 비롯한 다방면의 기술 전문성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우리 부의 특허재판 역량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들입니다.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들을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부/제22부]
재판장 고법판사
한소영



[제3부/제23부]
재판장 고법판사
김기수

특허법원은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결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문법원입니다. 또한 해외 당사자들이 관련된 사건이 많은 만큼, 국제 IP 소송의 법리와 실무 동향에도 늘 주의를 기울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고, 때로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부의 재판장으로서 이러한 특허법원의 역할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공계 전공으로 다수의 IP 사건을 담당해 온 안지열 고법판사, 송현정 판사와 함께,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교한 법리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와 판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이라는 특허법원의 가치 아래, 기술과 법률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를 통해 국내외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판장인 우성엽 고법판사(전자공학·법학), 임현화 판사(생명과학), 시용재 판사(지구환경과학), 황승욱 재판연구원(신소재공학) 등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이공계 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및 사법 전문성을 결합한 독보적인 역량을 가진 점이 저희 재판부의 특징입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지식재산권 분쟁 속에서, 저희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적,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에 충실하고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부/제24부]
재판장 고법판사
우성엽



[제5부/제25부]
재판장 고법판사
김재령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 왔고, 하나의 판결이 산업 현장과 기술 개발의 미래에 미치는 파급력을 무겁게 인식하며 매 사건마다 신중을 기해 심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5부에는 특허법원 등에서 바이오를 포함한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를 담당하며 IP 재판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이지영 고법판사와 성재혁 판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면서도 분쟁해결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관

2026. 7. 1. 기준

제11부(심결취소)
제31부(민사항소)



법원장 한규현

제1부(심결취소)



수석판사 정택수



고법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

제21부(민사항소)



고법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



판사 윤정운

제2부(심결취소)
제22부(민사항소)



고법판사 한소영



고법판사 박은희



판사 권원명

제3부(심결취소)
제23부(민사항소)



고법판사 김기수



고법판사 안지열



판사 송현정

제4부(심결취소)
제24부(민사항소)



고법판사 우성엽



판사 임현화



판사 시용재

제5부(심결취소)
제25부(민사항소)



고법판사 김재령



고법판사 이지영



판사 성재혁

민사조정



판사 윤정운

사무국

사무국은 재판부를 지원하고 법원의 행정·민원·기록관리 등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합니다. 총무과, 특허과,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법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재판의 전문성과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무과

총무과는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특허법원의 전체적인 운영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서무계는 법원 내 주요 행사 기획 및 진행, 인사 관리, 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무계는 법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게 지출 및 집행하며, 자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관리계는 청사 시설 전반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를 전담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및 재판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허과

특허과는 특허법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특별부와 총 5개의 재판부에 참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사무를 관리합니다. 본안 사건 외에 가처분 등 신청사건도 진행하며, 소장 및 각종 문건 접수 업무와 판결문 송달, 각종 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기술심리관·기술조사관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 기술적 쟁점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리를 지원하고자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심리관과 기술조사관은 기계, 전기, 통신, 화학, 바이오·약학 등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기술전문 인력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이공계 석·박사 학위 또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서 기술 분쟁 사건의 전문적·객관적 분석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합니다.



법원보안관리대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평온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 보안 부서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내부의 보안을 책임지며, 청사 전체의 방호를 전담합니다. 판사 및 법원 관계자는 물론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안심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및 집행문부여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및 홍보역량 강화로 IP Hub Court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내법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IP 법원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이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7년 5월 설립 10주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비교법적 연구 수행

우리나라 지식재산 재판제도와 실무를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와 판례, 제도 운영 현황 등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그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간한 비교법적 연구보고서로는 『주요국에서 디자인의 물품성 및 유사 판단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기술적 표장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국제화와 전문화 지원

특허법원의 국제화 및 전문화 지원을 위해 재판에서 검토가 필요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합니다. 재판부의 연구 요청에 응하여 실무적으로 국제적인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쟁점을 연구하고 국민이 법원의 소송절차를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특허법원 민사항소심/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영문 판례집 출간 및 WIPO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2015년부터 매년 특허법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판결을 선별하여 하나로 묶은 영문 판례집, 『IP High Court Decisions』를 출간해 오고 있으며, 2023년 판결부터는 주요 판례만을 따로 묶어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Leading Case Summaries of IP High Court of Korea』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판결 데이터베이스인 WIPO Lex(https://www.wipo.int/en/web/wipolex)에도 게시하여, 전 세계 누구나 대한민국 법원의 주요 판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법원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의 허브로서, 매년 국내외 판사 및 법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의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하계·동계 International Seminar를 개최하는 등 국제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비상임 연구위원, 방문 연구위원, 방문 연구원 제도를 운영하며,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연구자료 공유 등 연구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소송실무를 함께 발전시켜 가기 위하여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2월에는 몽골 사법연수정보원(JTRI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지식재산권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내외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비상임 연구위원 :** 정태호 교수(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 김동준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국내 자문위원 :** 정상조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욱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우성엽 고등법원판사(재판장), 이혜진 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대법원)
- **해외 자문위원 :** Edmond E. Chang 판사(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Iris Gunther 국장(국제상표협회), Anna-Lena Klein 판사(유럽통합특허법원), MIN Eun-Joo 소장(WIPO 사법연구소), 타카베 마키코 변호사(니시무라 앤 아사히, 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소장)

사법행정자문위원회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사법행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사법행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지식재산소송에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실무 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허법원 현안에 대한 심층평가와 자문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내외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위원회			
변호사	권동주(법무법인 화우) 한상욱(김앤장 법률사무소) 권택수(법무법인 태평양) 최정열(법무법인 율촌)	학계	이해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준(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만(KAIST 전산학부 교수)
변리사	김두규(HP프린팅코리아 IP 법무이사) 정영선(법무법인 그루제일)	산업계	예범수(KT IPR담당 상무) 홍부선(LG디스플레이 IP담당 상무)
의료계	복수경(충남대학교병원장)	언론계	노성열(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재판 역량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사법부와 과학기술계의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 재판역량강화 교육,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각 연구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특정 기술 사건에 맞는 전문가를 물색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관명	위촉일	성명(직위)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26. 6. 23.	現 조병관 학장
한국과학기술원	2026. 9. 1.	現 최성율 연구부총장
한국과학기술원(창업원)	2025. 9. 1.	現 배현민 창업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5. 9. 1.	現 권이균 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5. 9. 1.	現 이호성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2025. 9. 1.	現 류석현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6. 6. 1.	現 박세웅 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5. 9. 1.	現 권석윤 원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촉 예정
기초과학연구원	2025. 6. 23.	現 장석복 원장
한국화학연구원	2026. 6. 1.	現 신석민 원장

조정위원회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강동세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이영수 변호사/변리사(아이더스 법률사무소)
강영구 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이후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권동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최정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한상욱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운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부한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서동일 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지호 센터장(대한상사중재원)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장현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현도 교수(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구 교수(충남대학교 유기재료공학과)	이면헌 본부장(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본부)

외부 연계 조정기관

특허법원은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고자 국내 외부 연계 조정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은 2026년 8월 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WIPO 산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외부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 분쟁해결 제도를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특허법원은 국내외 외부 연계 조정기관과의 협업으로 국제적인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쟁해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 연계 조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WIPO 중재조정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8층(삼성동)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7층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Judicial Proceedings 특허법원 재판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제도와 심리절차
-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 전문심리위원
- 전문가증인
- 국제재판부
- AI 시범재판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제도와 심리절차

특허법원의 지식재산 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구별됩니다. 특허법원은 변론과 심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구 소송절차안내를 전면 개편한 표준심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한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거절결정,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 ② 품종보호권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거절결정,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에 대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결, ③ 지리적 표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거절결정, 지리적 표시에 대한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심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2심제로, 1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고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표준심리절차는 특허권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법원조직법 제62조의2에 따른 '국제사건'을 포함)에서의 변론과 심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은 특허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위 권리들의 이전·말소등록청구소송 등 권리의 귀속에 관한 소송 등을 포함합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한 6개의 지방법원에서 1심을 맡고 있고, 소송 목적물의 값에 따라 5억 원 이하 사건은 단독판사가, 5억 원 초과 사건은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각 담당합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소송 목적물의 값에 관계없이 모두 특허법원이 담당합니다.

특허법원은 사실심이므로 사실인정의 부당과 법령 위반을 모두 항소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만을 상고이유로 하여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심결취소소송과 달리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1심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족관계,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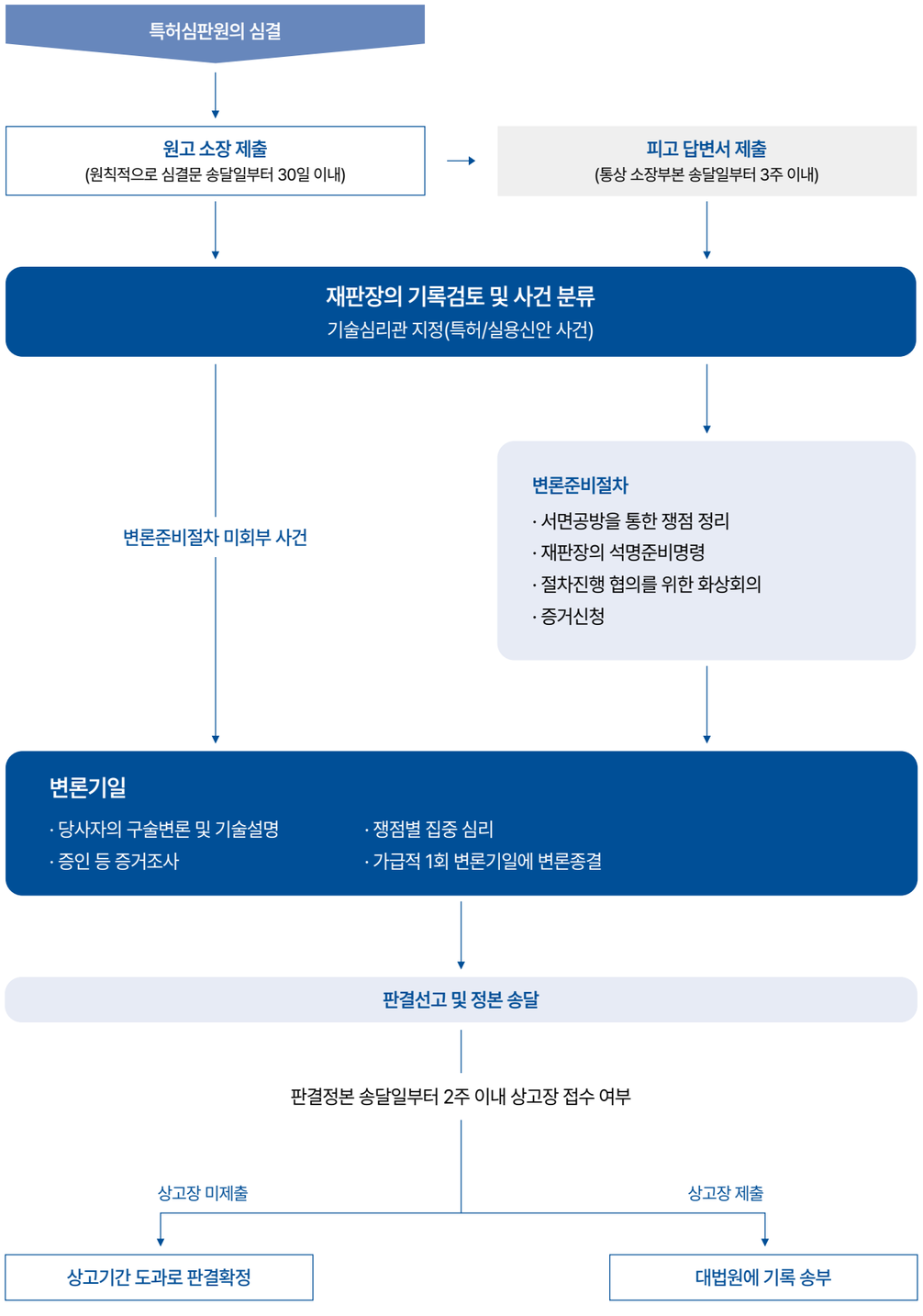
●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표준심리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항소심(법원조직법 제62조의2에 따른 '국제사건'을 포함)에서의 변론과 심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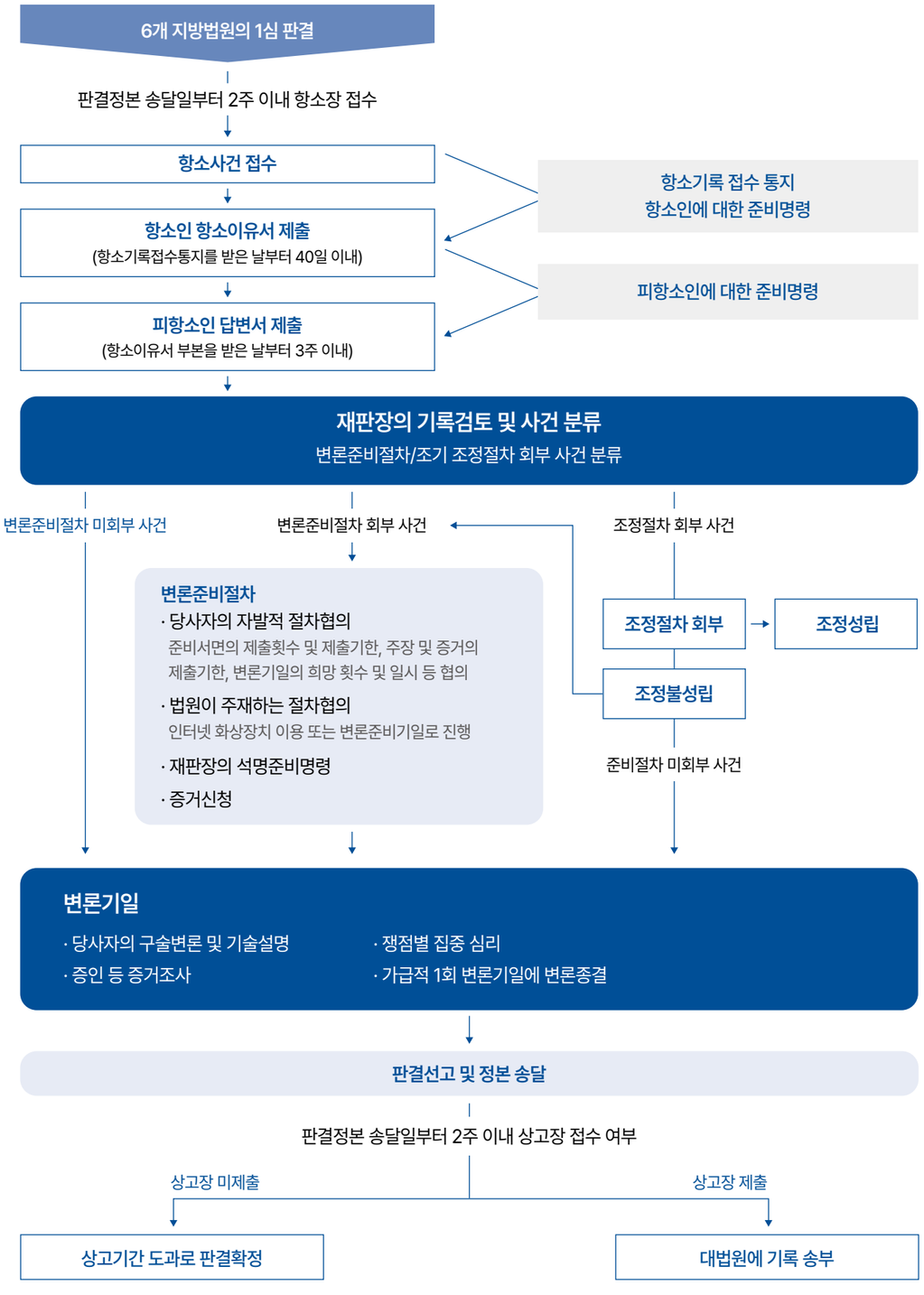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심결취소소송 절차흐름도



민사항소심 절차흐름도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 기술적 쟁점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리를 지원하고자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심리관과 기술조사관은 재판부의 명을 받아 기술적·전문적 사항에 관한 조사·검토, 증거 판단, 관련 전문지식에 관한 의견 진술, 소송관계인에 대한 질문, 합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계, 전기, 통신, 화학, 바이오·약학 등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특허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고도의 전문 인력으로, 지식재산처의 심사관·심판관 출신이거나,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변리사 등으로 실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심리관과 기술조사관은 개별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또한 변론 전 단계에서 개최되는 기술설명회를 통해 재판부와 해당 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변론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기술적 사항을 질문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실체적 진실 파악을 도모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제시하며, 법관은 이를 재판에 참조하되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법원은 기술심리관, 기술조사관 제도를 통해 복잡다단한 기술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재판의 전문성을 고도화합니다.

기계	6명
화학	4명
전기	4명
통신	2명
약품	3명
환경	1명
섬유	1명
토목	1명

기술심리관·조사관 현황: 총 22명(2026. 7. 1. 기준)
기술심리관 17명 기술조사관 5명

전문심리위원

재판부는 특정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서 해당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기계, 통신, 전기·전자, 화학, 약품, 농림,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두고 있고, 전문심리위원 추천위원회를 두어 해당 사건에 맞는 전문가를 물색하기도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서 기일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참여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사건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으며,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홍준영(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건재(한국과학기술원)
이홍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심승보(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선녕(한국기계연구원)	홍영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윤준보(한국과학기술원)	권영식(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호식(한국화학연구원)	홍관수(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영석(한국화학연구원)	

전문가증인

재판부는 기술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0조에 근거한 전문가증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합니다. 전문가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주신문은 제출된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주신문에서 전문가증인에게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간 전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증인은 당사자 일방에 편향되지 않게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이론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재판부

국제재판부는 외국인 당사자의 언어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이 국제적인 IP 소송환경에서 외국 당사자에 의해 더욱 선호되는 법정지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Global IP Hub Court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 국제재판부 사건의 요건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주요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당사자 역시 동의하여야 하고, 재판부는 국제재판으로 진행 시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재판의 진행

국제재판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재판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동의와 그 허가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하며, 국제재판이 허가되면 당사자들은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하거나 허가된 외국어로 된 서면과 증거를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는 통역사가 한국어를 외국어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며, 통역 서비스는 법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통번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번역문 제공 및 상소

판결은 국어로 선고하고, 상소기간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문 판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 시에는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 재판 절차

변론기일 전
서면 · 서증 제출
국어 또는 외국어 서면 및 서증 제출가능

▼

변론기일
구술변론 · 증인신문
국어 또는 외국어 변론가능, 법원에서 양방향 통역 제공

▼

판결선고일
판결선고
국문 판결 후 외국어 번역문 제공

AI 시범재판부

특허법원은 2026년 3월부터 인공지능 활용 시범재판부(특허법원 제2부, 제5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시범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범위에서 상용 인공지능(상용 AI)을 재판자료의 검토에 활용함으로써, 신중하고 정확하며 전문화된 심리를 지원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법판사 한소영


고법판사 박은희


판사 권원명


고법판사 김재령


고법판사 이지영


판사 성재혁

● AI 활용의 요건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자료를 상용 AI에 입력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AI 활용의 진행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미리 비식별화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상용 AI에 투입하고, 인공지능 결과물을 심리에 활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AI 결과물이 설득력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주의나 오해로 이를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 AI 활용의 범위

기록, 서면 요약 및 쟁점 추출, 전문분야 자료 검토·검증, 유사판례 검색, 변론 자동기록(STT), 번역 등에 활용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만으로 사실을 확정하거나 법률을 해석·적용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검색·산출한 법률정보도 반드시 검증을 거칩니다.

AI 활용 절차

재판자료 제출
- 양 당사자 동의 확인
- 비식별화 후 검색가능 파일 제출

▶

AI 활용(심리 참고)
- 기록 및 서면 요약, 쟁점 추출
- 전문자료 검토, 유사판례 검색
- 변론 자동기록(STT), 번역

▶

법관의 판단 및 선고
- 사실확정, 법률판단은 법관이 직접
- AI 결과물은 참고자료에 한정

Main Activities 특허법원 기록



심결취소 사건 주요판결
민사항소 사건 주요판결
발간자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국제 교류 및 협력

심결취소 사건 주요판결

특허

보안용지용 인쇄 장치 사건 (제5부)

2025. 8. 28. 선고
2024허14698 판결

판시사항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소극)

특허

엠파글리플로진의 치료적 용도 사건(제3부)

2026. 1. 15. 선고
2024허16038 판결

판시사항

1.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제2형 진성 당뇨병을 갖는 환자'라는 환자군을 치료 대상으로 하고, '엠파글리플로진'을 유효성분으로 하며, '입원이 필요한 심부전인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약용도로 하고, 엠파글리플로진을 '10mg의 총 1일 용량으로 경구 투여하는 것'으로 투여용량 및 용법을 한정하여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위와 같은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약리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 시험예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대상 환자군에 대하여 또는 그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의 설정에 따라 위와 같은 약리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 시험예도 부족하므로, 위 의약용도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

시각 효과를 가진 다중층 코팅 사건(제5부)

2026. 2. 12. 선고
2025허10293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선행발명에 근거한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이유가 주된 취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심결의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거절결정 이유의 실체적 타당성을 근거로 그 심결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

틱톡 사건(제1부)

2026. 1. 22. 선고
2025허10379 판결

판시사항

1.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용이성, 국내 사용자 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발생한 문화의 유무 및 그 파급력, 애플리케이션의 정보통신적 특성, 애플리케이션의 국외에서의 인지도 참작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사례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의 유사성, 연상 작용 발생 가능성, 원고가 그러한 연상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실제 수요자의 오인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선사용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

맛찬들 사건(제1부)

2026. 1. 26. 선고
2025허10401 판결

판시사항

1. 상표권자가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해온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가 묵시적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다고 판단한 사례

2. 통상사용권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따라 공급받은 제품에 사용된 상표 또한 그 주문자인 통상사용권자가 사용주체이고,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며, 제품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

010PAY 사건(제3부)

2026. 2. 12. 선고
2025허10405 판결

판시사항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상표가 사용된 모바일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 수익 구조, 인앱결제 허용 여부 및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대상 표장은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상표

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제3부)

2026. 4. 30. 선고
2025허10434 판결

판시사항

소모품(연속비닐봉투)에 표시된 확인대상표장이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사용태양 및 주지저명성,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태양, 사용자의 의도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모품이 호환되는 비품(쓰레기통)의 모델고유번호를 표시한 것이지 소모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디자인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사건(제4부)

2026. 4. 9. 선고
2025허10530 판결

판시사항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의 차이점 중 일부를 극복할 수 있으나 나머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 창작용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항소 사건 주요판결

특허

알리바바 사건(제21부)

2025. 5. 22. 선고
2023나10693 판결

판시사항

1. 외국회사인 원고가 보유한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외국회사인 피고가 외국의 플랫폼 및 외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광고, 판매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대한민국 법이 그 준거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2. 중국 법인인 피고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물건을 게시한 행위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제25부)

2026. 1. 15. 선고
2024나10591 판결

판시사항

1.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직무발명의 보상방법과 기준, 절차 등의 준칙을 정하고 있는 보상규정의 취업규칙성(적극)
2. 종전 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처분보상금 등의 보상항목을 삭제하는 보상규정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상규정의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원고에게 개정 전 1995년 보상지침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보상지침에 정한 보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에서의 종업원성이 문제된 사건(제22부)

2026. 1. 21. 선고
2021나1015 판결

판시사항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계약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며, 고용관계가 계속적, 계획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고 A가 피고를 퇴사한 이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퇴사하기 이전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종업원인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발명을 완성하여 그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제25부)

2026. 1. 22. 선고
2023나10525 판결

판시사항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취지 및 적용요건
2.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사용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만 고려하고,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한 사례

상표/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네이버 부동산) 사건(제24부)

2025. 12. 24. 선고
2024나11433 판결

판시사항

1.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수 개를 반복적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제·전송한 행위는, 데이터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전송한 행위에 해당되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 사례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표권자의 웹페이지에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 안내,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뿐,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웹페이지 등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상표

선사용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제22부)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엄격한 선출원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진정한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상표등록 출원된 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상표 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 선사용권에 관한 상표법 규정의 취지와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계약을 통해 상표 사용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정하면 되므로 이와 별도로 법정의 통상사용권인 선사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온 자는 해당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관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부정경쟁방지

서울우유 사건(제21부)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판시사항

1. '아침에'라는 표장의 식별력 유무 및 업계에서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라는 표장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 원고 주장의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각 포장용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3. 원고 주장의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각 포장용기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디자인

발가락 지압 교정기 디자인 침해 사건(제21부)

2026. 1. 22. 선고
2025재나10010 판결

판시사항

1.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권이 다수이고, 관련 형사 판결에서 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의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에 관련 형사 판결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디자인권이 무효인지 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및 관련 형사 재심판결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나아가 그 판결의 변경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각 심결이 확정되어 각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용실시권 및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발간자료

특허법원은 『주요국에서 디자인의 물품성 및 유사 판단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기술적 표장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의 비교법적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소송 실무편람』을 발간하였고,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및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와 각 절차의 영문본(Rules of Practice)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내외에 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IP High Court Decisions』, 『Leading Case Summaries of IP High Court of Korea』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적 연구보고서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2017)



각국의 IP소송 전속관할에
관한 연구(2019)



각국의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와
우리나라 실무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2020)



선택발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각국의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대한 연구(2022)



각국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2022)



기술적 표장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24)



주요국에서 디자인의 물품성 및
유사 판단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24)

판례모음집

영문판결



2015 Patent Court Decisions		2021 Patent Court Decisions	
2016 Patent Court Decisions		2022 IP High Court Decisions	
2017 Patent Court Decisions		2023 IP High Court Decisions	
2018 Patent Court Decisions		2024 IP High Court Decisions	
2019 Patent Court Decisions		2023 Leading Case Summaries of IP High Court of Korea	
2020 Patent Court Decisions		2024 Leading Case Summaries of IP High Court of Korea	

국문판결



2023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2024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2025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기타 발간자료

영문저널



IP LAW JOURNAL 2014 VOL. 1		IP LAW JOURNAL 2016 VOL. 3	
IP LAW JOURNAL 2015 VOL. 2		IP LAW JOURNAL 2017 VOL. 4	

법률용어사전 & 국제사건 백서



(한영, 영한) 지식재산 법률용어사전 발간		『제1호 국제사건 백서』 발간	
2022 지식재산 법률용어사전 발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특허법원은 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 논의와 함께 국제적 분쟁해결에 있어서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국제 콘퍼런스는 현재 전 세계 IP 법률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국제 학술·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2025년 세종 콘퍼런스는 IP5 국가의 법원장급 지식재산 전문 전·현직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기술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습니다.
2026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지식재산처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 있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첫째 날에는 표준필수특허(SEP) 및 FRAND 조건을 둘러싼 국제 분쟁, AI 학습데이터부터 산출물까지의 저작권 쟁점, 중재와 조정을 통한 새로운 국제 IP 분쟁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둘째 날에는 세계 각국 IP 담당 법관들이 참석하는 재판 실무 세션을 비롯해,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소송 전략과 IP 리스크 예방 우수사례를 폭넓게 다룰 계획입니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발자취

제1회
court, IP and INNOVATION
2015년 10월 14, 15일
IP 주요 국가의 전문법관들이 모여 지식재산소송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

제2회
court, IP and FUTURE
2016년 9월 7, 8일
특허소송에서의 도전과 혁신, 손해배상액 심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재판부와 지역통합법원에 대해 논의

제3회
court, IP and BUSINESS
2017년 9월 6, 7일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최신 이슈와 ICT산업을 중심으로 본 특허요건과 권리구제 및 특허법원의 조화와 협력에 대해 논의

제4회
court, IP and PROTECTION
2018년 10월 17, 18일
특허에 의한 발명의 보호, 영업비밀에 의한 기술정보 등의 보호,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및 세계 IP 재판의 최신 동향에 대해 논의

제5회
court, IP and FAIRNESS
2019년 10월 16, 17일
좋은 재판, 공정한 특허소송에 대해 논의. 중재패널이 특허법원 전자법정에서 국제재판부 설비를 이용하여 국제사건을 심리하는 모의재판 실시로 미래 분쟁해결의 청사진 제시

제6회
court, IP and GLOBALIZATION
2020년 11월 11, 12일
IP 국제재판 및 특허대상적격, 국경을 넘는 특허침해,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등에 대하여 논의

제7회
court, IP and HARMONIZATION
2021년 11월 10, 11일
세계 각국 IP 분야 주요 법관 및 전문가들이 온라인·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강제실시권 제도', '인공지능(AI)' 관련 발명, '직무발명' 등 IP 분야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논의

제8회
court, IP and New Practice
2022년 11월 9, 10일
최신 IP 동향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손해액 산정 등을 주제로 한 국제 토론 및 손해액 산정 관련 비교법적 모의중재 실시

제9회
court, IP and New Perspectives
2023년 11월 1, 2일
각국의 IP 소송 관할 및 IP 전문법원의 운영 현황,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출범과 비전,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금지명령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제10회
IP Court Conference & Symposium
2024년 11월 6, 7일
국제 지식재산분쟁에서 선호되는 법정지, 균등론(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각국의 이론과 실무), 의약 및 생명공학 발명의 최신 이슈, 소송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국의 실무, 인공지능(지식재산권 관련 이슈 및 재판에서의 활용)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

제11회
대법원 세종 국제 콘퍼런스 4세션
2025년 9월 22, 23일
혁신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반부에서는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각국의 사법 제도를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혁신기술의 발전과 사법의 미래를 논의

국제 교류 및 협력



● 마스터클래스 공동 개최

특허법원은 2025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마스터클래스를 공동 개최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 분야의 현안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실무 사례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관련 주요 주제에 대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참가자 간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국제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 각국의 법원 및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법원 등과의 교류

특허법원은 싱가포르 법원 및 지식재산·국제분쟁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재판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허법원의 국제재판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의 국제상사재판 등 양국 법원의 주요 현안과 실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등과 교류를 이어가며, 지식재산 및 국제 분쟁해결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제 콘퍼런스 참가

특허법원은 2025년과 2026년 WIPO Judges Forum, FCBA Global Series, 일본 지재사법 심포지엄, 대만 국제 심포지엄, 한일 지재사법 심포지엄, WIPO 카자흐스탄 워크숍, INTA Annual Meeting 등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와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특허법원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지식재산 사법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K-IP Week 구축

특허법원은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개최해 온 다양한 국제 지식재산 행사를 하나의 기간에 집중하여 개최하는 'K-IP Week'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와 법조인,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동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사법 및 정책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특허법원은 2026년 11월 4일과 5일 지식재산처와 연계하여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향후 K-IP Week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 법관 국제연수 확대

특허법원은 해외 법관 및 지식재산 분야 법관·법조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선진적인 지식재산 사법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에는 몽골 사법연수정보원(JTRIA)과 양 기관 간 교육·연수 및 지식재산 사법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7월 10일에는 몽골 사법연수정보원장이 특허법원을 방문하여 Visiting Scholar 연수에 참여하는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2026년 9월 17일에는 특허법원장과 몽골 대법원장이 양자회담을 갖고 앞으로도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국제 세미나 개최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고 재판 실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8일에는 '국제 IP Forum의 최신 이슈와 소송실무 및 대한민국 지재소송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디킨슨 로스쿨의 Daryl Lim 교수와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23일 하계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12월 10일에는 동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IPHC 2026

발　　행　2026년 10월
발 행 처　특허법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전화번호　042-480-1400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0146-001385-01

2019 IP HIGH COURT

IP HIGH COURT
OF KOREA